

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A2블록(분납임대)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I 공급대상 및 일정

☐ 공급위치 :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·옥길동·계수동 일원

☐ 공급대상 : 부천옥길지구 내 A2블록 분납임대주택 924호

블록	주택형	세대수(호)	용적률(%)	비 고	입 주
A2	59A	660	206.66%	10개 동(14~29층)	2016.9월(예정)
	59B	140			
	59C	124			

☐ 특별공급 배정물량 : 기관별 세대수는 추천양식 참조

☐ 분양가격 및 대금납부조건 : 미정(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)

☐ 공급일정(예정)

구분	일자	장소
입주자모집 공고	2014. 5. 9(금)	일간신문 및 공사 홈페이지 (http://www.lh.or.kr)
특별공급 신청접수	2014. 5. 16(금) (10:00~17:00)	LH 부천 주택홍보관 방문접수 (인터넷 청약접수 불가)

* 위 일정은 공급여건상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우리공사 홈페이지(www.lh.or.kr)에
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특별공급 신청자격
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

추천대상자	청약통장 구비 요건
•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지자체 철거민	• 청약통장 필요 없음
• 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 이상 복무군인, 우수기능인, 중소기업 근로자, 공무원, 의사상자, 남북피해자, 다문화가족, 우수선수	• 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

-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

* 세대원이란 세대주(신청자)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[세대주(신청자)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(신청자)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]

□ 특별공급대상 제외

1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자
 2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
 3.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
 4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과거 3자녀우선공급,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자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
- *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하며, 철거민 특별공급은 1회 이상 공급 가능

□ 행정요청 및 유의사항

- 청약자격 확인결과 위의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.

*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 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

-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히 세대주와 관련된 것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또한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 「2014. 5. 16(금)예정」에 신청하여야 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배정) 및 계약불가)

- 동호 선정방법

- 동호수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·층별·향별 등의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(동호 변경 불가)

III 신청시 구비서류

□ 공통사항

-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14. 5. 9 예정) 이후 발급분에 한함
- 필요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 접수불가
- 본인 및 배우자 이외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
-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한 것으로 제출

□ 본인(또는 배우자) 신청시 구비서류(각 1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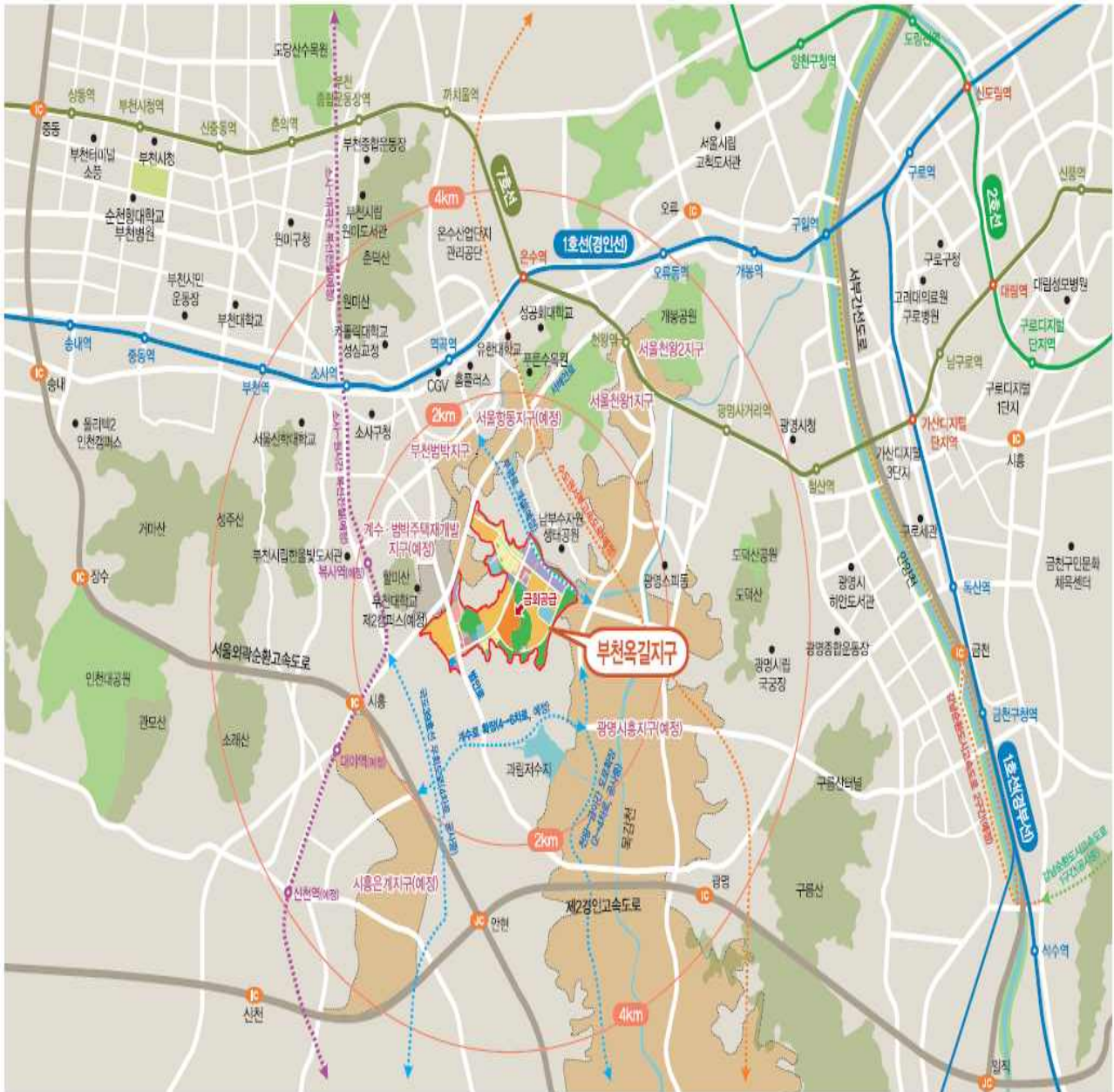
- 신청자 본인(또는 배우자)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되고,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
(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)

구분	구비서류		비고
본인 신청시	① 특별공급신청서		• 공사 소정양식, 신청일에 LH 부천주택 홍보관에 비치
	② 주민등록표등본		• 세대주(신청자)의 주민등록표등본
	③ 도장		• 세대주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
	④ 신분증		• 세대주(신청자)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
	⑤ 국민주택공급신청서 [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]		• 청약통장 가입은행 * 제출대상자 : 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이상 복무군인, 우수기능인, 중소기업근로자, 공무원, 의사상자, 납북피해자, 다문화가족, 우수선수
	추가 제출	⑥ 가족관계증명서	•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주인 경우
⑦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	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주인 경우	
배우자 신청시	본인 신청시 필요서류(①~⑦)와 배우자 신분증(주민등록증 및 여권)		
제3자 신청시	본인 신청시 필요서류(①~⑦)		
	⑧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		
	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		
	⑩ 청약자의 인감도장		
	⑪ 대리신청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		
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 부천주택홍보관을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셔야 하며,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하고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(다자녀,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노부모 부양 등)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 당첨될 경우 당첨건 모두 계약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통장호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.
- 자세한 일정, 분양가격, 전매·재당첨제한기간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등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(www.lh.or.kr) 등에 공고될 예정입니다.
- 청약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·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(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됨).
-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 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 제19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는 신청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참고자료

□ 위치도



□ LH 부천 주택홍보관

○ 위 치 :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225(계수동 57)

○ 전화번호 : 032-347-0003

○ 위 치 도

